

2026년 농산업 해외 종합박람회 참가기업 (추가)모집 공고

□ 모집개요

○ 개 요 : 해외 농산업 종합박람회(한국관) 단체 참가기업 직접비용 지원

○ 참가 박람회

개 최 국	장 소	명 칭	기 간	모집 규모	비 고
일본	치바	J-AGRI TOKYO	10.07~10.09.	13개社	

○ 지원대상 : 농기자재 8개 품목

- (지원자격) 농기자재 8개* 품목, 지원제외대상 **【별첨1】**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
* 농기계, 비료, 농약, 종자, 시설자재, 친환경농자재, 사료, 동물용의약품

○ 지원내용 : 부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(부스 및 비품임차비, 장치공사비 등)

- (중견·중소기업) 국고 70%, 자부담 참가비 30%, (대기업) 국고 50%, 자부담 참가비 50%

- 편도 운송·통관비 : 국비 100%

○ 추진일정

- (기업모집) 2026. 8. 11.(화) ~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

* **참가기업 신청순으로 적격여부 판단 이후 모집기업 초과 시 마감**

- (심사/선정통보)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확인 및 개별 메일 안내

○ 유의사항

- 公社 주관 타박람회*와 교차 지원 · 참가 가능

* **연간 최대 3회 박람회 지원 제한 적용 제외**

- 정부,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 박람회에 중복 지원 불가

□ 지원 세부내용

○ 지원범위

지원 사항	지 원 내 용	지 원 비 율
박람회 지원 범위	① 부스·비품 임차비, 장치비, 온라인 등록·홍보 등 박람회 부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* 장치 기본제공 범위 및 내역 - 조명, 기본벽체, 바닥카펫, 회사명 사인보드, 선반, 전시대, 상담용 탁자 및 의자,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<참고> 부스 배정 기준 * 참가기업당 1부스 원칙(12㎡이하) - 예외 적용 : 최대 5부스까지 배정 가능 (농기계 등 부피가 큰 품목을 전시하는 경우, 기타 농식품부, 公社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) ** 기본제공 면적 외 추가면적 필요시 사전 협의	(중견·중소기업) 국고 70%, 자부담 30% (대기업) 국고 50%, 자부담 50%
	② 홍보비 - 한국관 홍보 디렉토리 제작비용 등	
	③ 전시품 관련 운송·통관비 * 해상 운송 원칙, 부스당 1CBM 한도 ** 대형전시물은 4CBM까지 인정(公社와 사전 협의 필요) *** 반송 및 통관 비용은 개별 업체가 부담	
	④ 현지어 통역비 *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현지어 통역 제공	
	⑤ 네트워킹 만찬 * 참가기업 간 소통을 위한 네트워킹 만찬 제공	
	⑥ 부스별 바이어 매칭 상담 지원 * 바이어 사전 매칭, 현장 상담 진행	
행정지원	⑦ 부스암차 전시회 참가에 따른 주최 측 서류 제출 등 ⑧ 공식 협력사 선정 예정(장치사, 운송사) * 참가기업은 공식 선정 장치사, 운송사를 이용하여야 함	

○ 참가기업 부담

- 출장자 항공료, 숙박비 등 체재비
- 전시물품 반송 비용, 전시품 운송 초과비용(부스 당 1CBM 지원기준)
- 지원 내역 이외의 추가 장치 비용
- 기타 비자발급, 격리비용(필요시), 현지 이동비용 등

□ 참가기업 자부담

명 칭	자부담 금액	비 고
J-AGRI TOKYO 2026	약 280만원 내외	

* 정확한 자부담 금액은 추후 통보

** 참가 포기 시, 자부담금 환불 불가

□ 신청 및 발표

○ 사전공고기간 : 2026. 8. 17(금) ~ 2026. 8. 11(화) 14:00

○ 신청기간 : 2026. 8. 11(화) 14:00 ~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

*** 참가기업 신청순으로 적격여부 판단 이후 모집기업 초과 시 마감**

○ 신청방법 : 농산업 수출 종합지원 시스템(<http://www.agroex.or.kr>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(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→ 공고 및 참가 신청 → 해외 종합박람회 → 신청하기)

○ 신청서류 : 신청 단계에서 온라인 등록

구분	내 용
신청 서류	※ 아래 서류는 신청 단계에서 온라인 첨부 ① (필수) 온라인 - 수출실적 정보제공 동의 처리 * 최근 3개년('23~'25)간 수출실적 확인용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** 동의 방법 [붙임.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정보제공 동의 매뉴얼(Tmy Data)] 참고 ※ 신청기업의 수출 역량, 사업의 효과성 판단을 위해 정보제공 필수 동의 ② (필수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(필수) 참가 서약서 ④ (선택) 국내외 제품 인증·등록 취득 실적 및 특허 보유(PCT출원, CE인증 등) ⑤ (선택) 외국어 카탈로그 및 외국어 홈페이지 캡처본 ※ ④, ⑤ :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

○ 심사항목 : 신청서류 검토하여 사업 적격여부 판단

○ 선정결과 : 농산업 수출 종합지원 시스템 확인

(농산업수출활성화사업 → 지원내역) 및 개별 메일 안내

□ 유의사항

- ① 작성내용이 허위이거나,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환수를 요청할 수 있음
- ② 제출된 지원서 내용은 심사용도 이외에 외부공개를 하지 않으며, 제출된 자료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③ 평가 순위에 따라 예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, 선정 기업의 포기 또는 지원예산 발생할 시 순위에 따라 지원
- ④ 추진일정 등은 평가결과 및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
- ⑤ 참가비는 사업운영지침의 **【별첨2】**에 따라 청구·징수
- ⑥ 참가비납부는 추후 산정하여 별도 안내 예정
- ⑦ 기타 벌칙 및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**【별첨3】** 참조

□ 문의처

-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사업 담당자(061-338-5743, smart_ag@ekr.or.kr)

【별첨 1】 지원제외대상

- ① 농기자재 이외 품목(공산품 등) 해당 기업
- ②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- ③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④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
- ⑤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- ⑥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- (특수관계기업)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, 부정행위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
- ⑦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자/기업
- ⑧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⑨ 기타 본 사업에서 규정하는 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【별첨 2】 기업 참가비 산정 및 처리요령

- “사업비 지원 비목”의 $[(① + ② + ⑥) * 0.3]$ 을 산출하여 기업참가비 산정
- 전시물품 반송 비용

* 사업비 집행 비목

비 목	비 고
① 임차료	업체당 12㎡ 이하, 1개 부스 지원
② 전시디자인 설치, 해체	한국관 장치 디자인 및 공사 비용 지원
③ 전시품 운송, 통관비	업체당 최대 1CBM, 해상편도비용 편도 100% 지원 (대형전시물은 4CBM까지 인정)
④ 통역비, 네트워킹 만찬비	박람회 기간동안 1업체당 1인 현지어 통역, 사전점검 당일 네트워킹 석식 1회 제공
⑤ 바이어 매칭 상담 지원	바이어 사전 매칭, 상담 지원
⑥ 홍보비	한국관 홍보 디렉토리 제작 지원

* ①②⑥ 산출금액의 70%에 한하여 국고 지원 (참여기업 30% 자부담),

③④⑤ 산출금액 100% 지원(운송, 통관비는 편도),

** 단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

①②⑥ 산출금액의 50%에 한하여 국고 지원 (참여기업 50% 자부담), ③④⑤는 동일

*** KOTRA 해외박람회 지원 지침 내 기준 준용

【별첨 3】 별칙 및 의무사항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종합박람회 및 개별박람회 사업 참여 제한
 - 1.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 받는 경우
 - 2.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허위 보고한 경우
 - 3.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- ②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
- ③ 박람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업체가 박람회 참가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박람회 참가신청부터 다음 각 호의 패널티 및 감점 부여 가능
 - 1. 종합박람회 : 사전설명회 후 참가 포기, 박람회 불참 시 당해연도 잔여박람회 참가를 취소하고 참가비를 환급하지 않으며 차년도 박람회 참여를 제한
 - 2. 개별박람회 : 사업선정 후 참가포기 시 차년도 개별박람회 및 종합박람회 참여 제한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유 발생 시 다음 차년도 박람회 사업참여 제한
 - 1. 박람회 현장에서 불성실한 부스 운영 및 박람회 운영요원의 정당한 현장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
 - 2.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관련 규정을 불이행한 경우
 - 3.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거나, 박람회 주최사, 장치 등 박람회 관련 업체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비용납부에 응하지 않은 경우
 - 4. 박람회 참가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전시품 운송에 협조하지 않는 등 원활한 한국관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